

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5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규제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보조금운영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제고

2. 주요골자

- 가. 보조신청 조문개정 (안 제5조)
- 나. 보조금 교부조건 삭제 (안 제7조제2항)
- 다.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조문개정 (안 제12조제1항)
- 라.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조문개정 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관련근거

- 가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(적용범위)
- 나.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”를 “사전에 군수의 승인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은 달성 할 수 없을 때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조신청) ①(생략) 1 ~ 5 (생략) 6.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(생략) 1 ~ 8 (생략) 9.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</p> <p>제7조(교부금의 교부조건) ①(생략)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)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,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)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 2. 보조사업비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.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~6. (생략)</p>	<p>제5조(보조신청) ①(현행과 같음) 1 ~ 5 (현행과 같음) 6. (삭제) ②(현행과 같음) 1 ~ 8 (현행과 같음) 9. (삭제)</p> <p>제7조(교부금의 교부조건) ①(생략) ② (삭제)</p> <p>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) ----- ----- ----- ----- 1.(현행과 같음) 2.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3.(삭제) 4.(삭제) 5~6.(현행과 같음)</p>